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위반하지 않으면...



김나의
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뺑소니’ 처벌규정이다. 뺑소니 사고를 위와 같이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 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 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의 병원이송과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견인차량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함으로써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고 현장을 일탈하여 약 20분 뒤 돌아온 경우, 설령 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비록 피해자가 구급차로 호송되었다하더라도 운전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뺑소니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즉, 뺑소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사상 당하였음을 인식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위 구호조치의무와 신원확인 의무는 양자 모두 이행되어야 하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이다.